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6-13
----------	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6. 1. 28.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상위규정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특별휴가 중 육아시간 및 경조사 휴가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육아시간 사용일의 시간외근무 허용(안 제14조제7항)
- 나. 배우자 출산 시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(안 별표 3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, 「지방자치법」 등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)
- 다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7항 단서 중 “**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**”을 “**모성보호시간**”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1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29일부터 적용하고,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11일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3]

경조사별 휴가일수표

(제24조제1항 관련)

구 분	대 상	일수
결 혼	본인	5
	자녀	1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1
출 산	배우자	20 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)
사 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3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
입 양	본인	20

* 참고 : 입양은 「입양특례법」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,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4조(특별휴가) ① ~ ⑥ (생 략)</p> <p>⑦ 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날의 최소근무시간은 4 시간 이상(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는 3시간 이상으로 한다)이 되어야 한다. 다만, 의장은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의 같은 날 사용을 승인할 수 없으며, <u>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</u>을 사용한 날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.</p> <p>⑧ · ⑨ (생 략)</p>	<p>제14조(특별휴가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<u>모성보호시간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⑧ · ⑨ (현행과 같음)</p>

[별표 3]

경조사별 휴가일수표

(제24조제1항 관련)

구 분	대 상	일수
결 혼	본인	5
	자녀	1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1
출 산	배우자	10 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)
사 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3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
입 양	본인	20

경조사별 휴가일수표

(제24조제1항 관련)

구 분	대 상	일수
결 혼	본인	5
	자녀	1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1
출 산	배우자	20 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)
사 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3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
입 양	본인	20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 제2항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의회사무국 의회행정팀 박철호
연락처	02-3153-6162

관 계 법령

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

- 제7조의7(특별휴가)**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

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[별표 1] <개정 2025. 2. 11.>

경조사 휴가일수표(제7조의7제2항 관련)

구분	대상	일수
결혼	본인	5일
	자녀	1일
출산	배우자	20일 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)
입양	본인	20일
사망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	3일

비 고 : 입양은 「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,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와복수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